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5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
발 의 자: 강동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 경, 김성준, 박강산,
박승진, 박유진, 박철성,
봉양순, 서준오, 성흠제,
송재혁, 오금란, 왕정순,
유정희, 이민옥, 이소라,
이승미, 이영실, 이용균,
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
전병주, 최기찬, 최재란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재난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 등에게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주택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- 이에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수신 상태를 인지하고 재알림 등 미인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관련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 관련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호)
- 나. 시장 등에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소화 노력 의무 신설(안 제3조제6항)
- 다.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 정보 수신 상태 인지와 재알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 권고 및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5조의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재난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
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 및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임차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4(공동주택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유·무선 통신비 지원) ① 시장은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 정보 수신 상태를 인지하고 재알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“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”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, 필요한 경우 그 통신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5조의4 (공동주택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유·무선 통신비 지원)	△	◦ 긴급재난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재알림(“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”)을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지침)에 따라 현재 기 추진¹⁾중이며 ◦ 다만, 기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외 추가적인 재알림(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)운영 통신비용 지원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조례안 제5조의4(공동주택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유·무선 통신비 지원)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수신 상태를 인지하고 재알림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“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” 운영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1)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(행정안전부, 2019.8.) 발채 * 출처 : 서울시 관련부서 제출자료

가. 법적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4(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·운영 등)
-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(행정안전부예규 제76호, '19.5.31 개정)

< 운영규정 주요 개정사항 >

- 지방자치단체 송출권한 명문화(제11조 송출요청 권한)
 - 시·군·구청장이 직접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가능
- 송출기준 개정(별표 1)
 - 미세먼지 : 경보, 비상저감조치발령 시(비상저감조치발령 이후 경보 발령 제외)
 -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판단(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)하여 조치할 사항 추가

나. 기관별 역할

- 운영책임자: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(민방공경보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), 시도 및 시·군·구 상황 업무 부서장, 기상청 담당 부서장

다. 긴급재난문자(CBS) 송출 방식

- 이동통신사(SKT, KT, LGU+)와의 협정을 통해 무료로 운영 중
- 국민 다수에게 개인정보 침해 없이 재난정보 전달 가능
 - 각각의 휴대전화 번호(정보) 등록 없이,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통신 중인 단말기 소지자는 누구나 긴급재난문자 수신 가능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